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
-가칭 「충실한 재판 연구반」-

2016. 5. 13.

1. 구성(9명)

▣ 운영진(의장 1, 간사 4) 모두 연구반원으로 참여

- 의장: 박○○ 판사(31기, 개인회생단독)
- 간사: 김○○ 판사(32기, 중액단독), 이○○ 판사(33기, 형사단독), 윤○○ 판사(34기, 신청단독), 문○○ 판사(37기, 소액단독)

▣ 그 외 연구반원(4명) 섭외

- 최○○ 판사(33기, 신청단독), 안○○ 판사(34기, 중액단독), 김○○ 판사(36기, 개인회생단독), 홍○○ 판사(38기, 소액단독)

▣ 김○○, 이○○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'국제인권법연구회' 회원

2. 목적

▣ '처리건수와 효율성에 치우친 재판의 문제', '비재판업무 부담의 문제' 등 좋은 재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나 관행이 무엇인지를 검토(연구반 회의) ⇨ 판사들부터 수렴된 의견 종합(점심 간담회 등) ⇨ 판사회의에 부의할 안건 성안

3. 운영 일정

▣ 5. 4.(금) 1차 회의 개최 ⇨ 이후 2주 간격으로 회의 개최

▣ 매 회의 후 회의록 정리하여 단독판사들에게 공지할 예정

판사들의 수다 I

판사들, 난상토론을 시작하다.

날치 : 그 동안 공부들은 다들 잘하고 오셨는지? 법원행정처 등 연구회에서 만들어진 자료들 중에 참신한 의견이 많더라. 적정처리건수를 정하는 문제라던지, 기획법관을 선출한다던지, 판사회의를 좀 더 실질화한다던지 등등

거북 : 다들 그간 고민했던 것들이 많을 거 같다. 돌아가면서 한명씩 말해봤으면 좋겠다.

기획법관? 고충처리법관이 필요하다.

해마 : **판사들의 고충을 업무로써 전담하는 판사가 필요하다**고 본다. 양성평등이나 성희롱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중간 통로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, 그 통로가 기획법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. **판사회의에서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간사를 뽑았으면 좋겠다**는 의견들이 나왔다. 기획법관처럼 **업무부담도 줄여줘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.** 일선 판사들의 신망을 얻어 선출된 분. **기존 기획법관의 업무는 하향식 업무나 의사전달 통로로 쓰일 뿐 상향식 의사전달로는 부적당한거 같다.**

갈치 : 기획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익명이 아니어서 의사전달이 안되는 건 아닌지.

해마 : 그건 아닌 거 같다. 지금 **현재의 기획법관들은 그런 걸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거 같다.**

고래 : 지원 단위의 작은 법원에서도 기획법관이 생기고 있다. 거의 다 생기고 있다. 그런데 **작은 법원에서는 기획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줄이는 거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.** 거의 법원장님 비서 역할이다. 판사가 굳이 해야 할 일인가? **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닐까.** 다른 판사들의 업무분담에 끼치는 영향은 큰 반면 **재판충실에는 오히려 반하는 거 같다.**

물개 : 사무분담에 기획법관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?

해마 :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획법관에게 말했다가 냉대받은 경험이 있다.

날치 : **기획법관들마다 판사들의 고충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다른 거 같다.**

물개 :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사들이 수석부장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거 같다. 그냥 기획법관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되나?

날치 : 단독판사들도 문제지만 배석판사들은 또 다르다.

해마 : 젊은 배석들은 우리와 또 성향이 다른 거 같다. 특히 작년에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서 **합의부 밥 먹는 걸로 이슈가 선점되었는데 아쉽다. 그런데 그만큼 지금 배석판사들이 그런 문제조차도 힘들게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.**

해마 :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전체 판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면 단독 판사 위주가 아니라 전체 법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를 했으면 좋겠다.

거북 : 기획법관 문제는 나도 관심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, 논의 방향도 다양하고. 따로 날을 잡아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.

물개 : 정○○ 판사님이 의장되면 다 처리해주신다고 했었는데.

모두 : 투표를 잘못 한 듯 ^^

고래 : 뭔가 문제를 말하려고 해도 기획법관들이 너무 자질구레하게 일을 많이 맡고 있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.

날치 : **기획법관을 위시해서 판사들 사이에 층이 늘어나는 건 서열의식, 대접받고 싶어하는 문화 때문이기도 해서 쉽게 없어지기 힘들 거 같다.**

거북 :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지.

'처리건수'는 '충실한 재판'의 최대의 적?

날치 : 모임 전에 기존 자료들도 공부하고 또 다양한 판사들과 이야기도 나누어봤다. **전체적으로 판사들이 무기력감이라고 해야 하나. 뭔가 패배의식이 있다.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할까.**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다. 또 기존 자료들을 보니 법원의 관료화부터 법복을 정기적으로 공동세탁하자는 의견까지 내가 평

소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판사들이 다 논의했었더라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이 거의 반영이 안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판사들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 같다. 주체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 같다. **행정처에서 먼저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다.** 생각을 바꿔야한다.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. 너무 많은 이슈를 욕심내지 말고 **구체적인 이슈 한두 개를 다루되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걸 이슈로 정했으면 좋겠다.** 그래서 나는 적정처리건수를 정하는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. 그런데 '적정처리건수'라는 용어는 좀 오염된 감이 있으니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. **'충실한재판가능건수'는 어떨까? 우리 법원 차원에서 법원장님께 제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안되면 단독판사회의에서 자체적으로도 정할 수 있다.**

문어 : 적정처리건수만 정해진다고 해서 다되는 건 아닌 거 같다. 처리건수라는 기준이 빠지면 그것을 채울 뭔가 다른 다양한 것들도 함께 논의되어야할 거 같다.

물개 :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**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서 문제인거 같다.** 저글링 할 때 공이 많아지면 정신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. 한번에 돌리는 건수 자체가 적정해야한다.

갈치 : **사건이 많이 돌아가는 이유가 꼭 통계때문은 아니지 않나?**

물개 : 그래서 **즉시 배당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. 사건을 처리하면 또 다른 사건을 배당받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.** 이전에 **문지기 재판부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.**

문어 :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진 이유가?

날치 : 일부 외국법원에서는 즉시 배당하지 않고 법원 전체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일선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면 새롭게 배당하는 그런 식으로 배당을 한다고 들었다.

해마 : 그래서 외국 법원에서는 절차만 담당하는 판사들도 많다고 들었다. **파트타임 판사 제도가 도입된 마당에 그런 업무를 맡게 하면 되지 않냐?**

문어 : 그런 업무를 맡는 판사들은 싫어하지 않을까?

해마 : 파트타임은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한다.

갈치 : 그런데 우리가 꼭 통계때문에 사건을 많이 돌리는 건 아닌 거 같다. 배당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. 배당을 늦추는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.

물개 : 배당 이전에 **이미 실질적인 변론이 가능한 단계인지까지 분류해서 배당했으면 좋겠다. 감정이나 검증신청도 가능한 그런 사전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.**

거북 : 문지기 재판부랑 실질적으로 비슷한 역할인거 같다.

날치 : 판사회의에서 배당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결의할 수도 있나? 우리법원 차원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.

거북 : 다른 안건은 없으신지?

이제부터는 1심이 중심이다.

문어 : **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해야 1심이 더 충실해 질 수 있을 거 같다.** 그래야 법원 전체도 업무부담이 줄어들고. 재판은 1번으로 끝난다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. 그런 원칙을 단독판사회의에서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.

전복 : **1심에서 증거를 많이 채택하고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. 그거랑 신속한 처리랑 다 같이 갈 수는 없다.** 지금은 서로 눈치보는 단계인데 단독판사회의에서 그런 걸 집어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.

거북 : **순서가 바뀌었다고 본다. 1심 충실화가 먼저다.** 지금 이 모임의 전제도 1심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? 단독판사들이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자고 결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은가?

고래 : 1심 충실화의 전제들 중 하나로 제안하는 것이다.

물개 : 법률자체가 항소심이 속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떨지. 입법론적으로는 사후심으로 하는게 더 타당한거 같긴 하지만.

갈치 : 지금은 예전처럼 빨리 끝내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다. 다만 **변호사들이 1심판결을 받아본 후 다시 주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.**

물개 : 적절한 심증개시가 필요할거 같다.

해마 : 그것도 사건건수가 줄면 될 거 같다.

날치 : 능력의 차이도 있다. **모두 다 즉석에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.**

문어 : 즉석에서 이해하고 토론하는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에서 할 수 있을까?

해마 : 바로바로 이해 안되는건 **속행 기일을 짧게 잡아서 해결할 수 있다.** 이해 안되면 검토하겠다고 하고 다음 날 기록검토한 후 바로 다시 기일 잡으면 된다. 이것도 사건이 적으면 가능하다.

모두 : 결국 건수가 문제구나.

물개 : 심증개시를 안하는 것도 문제다. 1심에서 다뤄지지 않다가 판결에서 그것 때문에 결론이 나면 항소를 안 할 수가 없다.

거북 : **차○○ 판사가 만든 독일재판에 대한 논문**을 읽었는데 우리와 완전 다르다. 우리 민사소송법 독일식 모델을 생각하면서 개정했다는데, **독일식에는 완전 전면적 토론과 판사의 심증개시가 있다.**

해마 : 또한 **독일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활발히 받고 있다.**

날치 : 건수의 문제도 좀 더 면밀히 보자면 1심 재판장 당 건수가 문제가 아닌가. 1심 재판장 수는 판사 수를 급격하게 늘이지 않아도 현재 구조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다. **항소심을 줄이고, 비재판보직에 있는 판사수를 줄이고 합의부 소가를 늘여서 1심 재판장 수를 늘이면 되지 않나.**

해마 : 행정처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안다. 왜 실행이 안되는 건지. 그런데 건수가 줄어도 **장기미제가 2년이면 너무 부담**되지 않나?

합의부 배석도 판사지 말입니다.

갈치 : 적정처리건수나 그런건 오히려 단독들보다 합의부 배석들에게 더 필요한거 같다. 단독들은 그래도 스스로 처리건수를 조절할 수 있지만 **합의부 배석들은 부장님들이 정해 준 대로 해야 한다.**

날치 : 지금 우리 법원에서 제일 고생하고 있는 판사들이 합의부 배석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. 그런데 단독판사회의에서 배석들 문제를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.

물개 : 궁극적으로는 현행 배석제도를 없애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. 지금 현행 제도는 현행 법에도 맞지 않다. **원래 법 취지대로 대등한 법관 3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.**

문어 : **법원에서 합의부 부장될 사람을 선출했으면 좋겠다.**

날치 : 배석들이 가고 싶은 부장을 적어서 2명이상이 지원하면 그 분이 부장이 되는 방식? ^^

다시 한번 '법원 내 재판의 독립'을 생각한다.

해삼 : **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다.** 예를 들면 **통계돌리기** 등. 지금 우리 법원에서도 **형사부에서는 한 달에 한번 통계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.**

그리고 지금도 형사 같은 경우 **큰 건이 배당되면 그 재판부에는 배당을 줄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. 이러한 방식을 확대해서 즉시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, 적정처리건수가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사건을 배당**하는 방법이 현 시스템 하에서도 가능한거 아닌가 한다.

또한 **재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재판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장님이나 수석부장님이 공식적으로든, 비공식적으로든 언급을 자제**해 주시면 좋겠다. 그런 내용은 **법관들의 워크샵 내지 토론회에서 상호 토론을 통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**하다. 그런 의미에서 **재판 관련 감사도 개선될 필요**가 있다.

거북 : 형사부에서 지금도 통계를 돌린다면 작년 법관소통마당에서 했던 설문조사결과를

무시하는 것이기도 해서 더 큰 문제라고 본다.

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.

거북 : **통계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.** 지금 현재는 처리건수와 조정건수만 신경쓰고 있다. 처리건수 위주의 패러다임만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**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.** 재판의 질에 대한 평가로 바뀔 수 밖에 없다. **항소률, 종국률, 파기률 등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에 방점을 두는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.** 사건을 200건 정도 주고 시범재판부를 운영해봤으면 좋겠다.

물개 : 자원하고 싶다.^^

날치 : **'충실한재판가능건수'를 우리가 매해 정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. 단독판사차원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서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.** 시범재판부에서 모든 사건을 다 충실한 재판모델로 운영할 필요도 없다. 전체 사건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퍼센티지를 알아 본 후 각각의 유형 당 2건 정도만 실제 기록검토, 재판운영, 조사 및 판결작성에 들어가는 실제 시간을 체크하고, 그걸 전체로 환산하면 된다. 판사들 몇몇만 자원해서 실행해 보면 된다. 그 것과 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완해서 산정하면 될 거 같다.

물개 : 2010년에 법원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실제 판사들이 하는 업무를 타이머로 체크한 적이 있는데 판사일이라는게 계량하기 힘들어서 판사증원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.

거북 : 그리고 일부 사건만 선별해서 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과의 형평의 문제도 있지 않나.

해마 : 그냥 동참하는 판사들을 많이 받아서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.

전복 : 이미 기존 자료들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거 같다. 충실한 재판의 전제 조건으로 사건수가 적어야한다는데 동의한다. 그게 핵심은 맞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지. '충실한재판가능건수'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그걸 산출할 수 있을지.

해삼 : 시범재판부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다. 충실한 재판을 해서 종국률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거 같다. 어떤 부지런한 판사는 한 달에 한번 까다로운 사건 한 두건을 정해서 증거조사기일을 운영한다고 들었다. 그거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심증이 개시되면서 당사자들이 결론을 더 잘 알게 된다고 들었다.

문어 : **현재는 효율성을 중요시해서 좀 의심스러운 것도 다시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들 의견 듣지 않고 그냥 혼자 사무실에서 보고 만다.**

물개 :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서면이나 증거에서 알 수 없었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발견할 때도 있다.

거북 : 결국 **사법행정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논의들이 '시간에 쫓기지 않을 심리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.'는 생각이 든다.**

소액판사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다.

날치 : 소액판사들은 어떤가? 건수도 많고 여건이 많이 안좋다고 들었는데.

★ : 법원 들어와서 요즘 제일 야근을 많이 하고 있다. **소액의 경우 지금 재판부 밖에 사건진행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**한다고 한다. 전광판의 설치목적은 알겠는데 **사건진행 정도를 클릭하는 것도 일이 많은 실무관이 하고, 재판관의 압박도 있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사건에 1분에서 2분 정도 밖에 할당되지 안 된다는 걸 알리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.**

그리고 한 기일 당 **800건 중에 700건이 금융공시인데 계속하다보면 대부업체 직원이 된 거 같다.** 판사로써 자긍심이 떨어진다.

■ : 지급명령에 대해 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도 **사법보좌관들이 공시요건판단이 어렵다고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.**

★ : 금융공시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지 않을까.

날치 :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거 같다.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해야할 재판에 판사들의 역량이 투여되어야할 거 같다.

해삼 : 소액판사들은 아무래도 통계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?

★ : 아무래도 앞자리 수가 바뀌니깐.

■ :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다. 그래서 실무관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다.

거북 : **판사들의 역량을 분쟁성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**는 의견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.

밤샘토크가 필요한 때

거북 :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, **충실한재판가능건수**(행정처에 건의해야할 차원일지, 법원장님께 건의해야할지, 단독 판사 자체적으로 할지, 산정방법과 시행의 문제 등), **통계패러다임의 양에서 질로의 변화, 즉시배당에서 적시배당으로,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,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의 자제, 기획법관문제**(상명하달 문제, 기획법관의 역할,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경우 항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), **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과외업무 등**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. 다음 모임부터는 하나의 소주제를 나누어서 집중토론했으면 한다. 합의부 문제는 또 따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한다.

날치 : 이야기하다보니 밤을 새겠다. 왜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. 아예 방 잡아서 1박 2일 동안 해야 할 거 같다.

해마 : 그것도 부족할 듯.